

2026년도 제3회 수원출입국·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등록 일정 공고

2026년도 제3회 수원출입국·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4일
수원출입국·외국인청장

1. 합격자 명단

○ 최종 합격자

응시번호	성명
2026-03-06	성 ○ 현

○ 예비 합격자

응시번호	성명
2026-03-08	하 ○ 연

2. 채용후보자 등록

- 대상자 : 최종합격자 1명
- 등록기간 : 2026. 9. 7.(월) 18:00까지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 - 방문 등록 :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(대리등록 불가)
 - 등기우편 등록 : 등기우편 발송(우편등록은 접수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한 등록으로 인정)
- ※ 접수처: (우 16075)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·외국인청 3층 운영지원팀
채용담당자 앞 (031-695-3813)
- 인터넷·택배 등록 '불가'

○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부등본 1부
- 기본증명서(본인명의, 상세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명의, 상세) 1부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가정법원 발행) 1부
-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) 1부
 - ※ 검사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므로, 영수증 등 수검 증빙서류 제출 요함
 - ※ **최근 3개월 이내 실시한** 국가건강검진 검진서로 대체 가능
- 반명함판(3cm×4cm) 사진 2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- 통장 사본 1부(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)
-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**【별첨 1】**
- 공정채용확인서 1부 **【별첨 2】**

3. 참고사항

- 근로개시 예정일은 2026년 9월 9일(월)이며,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희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출입국·외국인청 운영지원팀(**☎031-695-3813**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별첨 1】

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법무부 수원출입국·외국인청 시행 2026년도 제3회 기간제
근로자 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
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<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>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6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법무부 수원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

공정채용 확인서

(응시자용)

작성자 인적사항

생년월일 :

성명 :

※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확 인 사 항	해당여부	
	예	아니오
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?	☐	☐
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?	☐	☐
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?	☐	☐
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,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)촌 이내 / 소속기관 : 근무부서 : 이름 :		

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서명 (인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
- ① 수집·이용목적 : 채용경로 조사 및 「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- ② 수집·이용항목 :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 동안 보유

법무부 수원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